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 |
|------|------|
| 의안번호 | 1563 |
|------|------|

2020. 6. 16.
기획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5월 25일, 이태성 의원(찬성의원 11명)

나. 회부일자 : 2020년 5월 29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295회 정례회】

-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2020.6.16.)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기획조정실장 조인동)

1. 제안이유

감염병 대응 조직 신설을 위해 감염병 전담인력을 증원하고, 서울대 공원의 사육운영직 퇴직 인력을 신규 충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가칭)감염병전담센터 설치에 따라 감염병 전담인력을 증원함(+8명).
 - 센터장 4급 정원 +1 및 연구사 정원 +7
- 나. 서울대공원의 사육운영직 퇴직에 따른 신규인력 충원을 위해 전문경력관 정원을 조정함(5급 이하 △5명 → 전문경력관 +5).

Ⅲ.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감염병전담센터 설치와 감염병 전담 인력 배치를 위해 4급 정원 1명과 연구사 정원 7명을 증원하고, 서울대공원 소속 사육운영직의 퇴직에 따라 신규인력 충원을 위해 전문경력관 정원을 인력증원 없이 상계조정 하고자 제출되었음.
-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두는 공무원의 정수는 18,701명에서 18,709명으로 8명 증원됨.

나.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증원(+8명)

-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신종감염병 대비를 위한 감염병전담센터 신설과 보건환경연구원에 감염병 전담인력을 추가하기 위해 총 8명(4급 1명, 연구사 7명)을 증원하게 됨.

- 서울시는 ‘서울형 표준방역 모델 구축계획’ (2020.5.20.)에 따라 ▶감염병 대응기반 강화, ▶의료방역자원 강화, ▶코로나19 2차 확산 대비 대응체계 구축 등을 위해 “감염병전담센터” 를 설립할 예정임.
- 감염병전담센터는 서울시 차원에서 감염병 유행 예측과 대응 방안 등의 감염병 관련 정책을 연구하는 조직으로, 감염병 정보 분석, 외국 감염병 사례 수집, 감염병 발생시 역학조사 방법 및 환자 치료에 필요한 사항 등을 연구하게 됨.
- 당초 서울시는 감염병전담센터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설치하는 것으로 발표했으나, 감염병 관련 정책의 수립·조정 기능을 고려해 시민건강국에 두는 것으로 변경했음.
- 감염병전담센터는 총 13명의 인력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이 중에 센터장인 개방형 4급 1명과 보건연구사¹⁾ 2명의 정원은 개정안을 통해 증원하고 나머지 인원(10명)은 기존 정원을 활용할 계획임.

〈감염병전담센터 구성 인력〉

개방형 4급(의무) 1명, 임기제 의무5급 2명, 행정5급 및 6급 각 1명, 보건연구사 2명, 임기제7급(약무, 간호, 보건, 수의, 의료기술, 전산) 각 1명

- 이 밖에 보건환경연구원에 감염병 전담인력을 증원하기 위해 5명의 연구사를 추가로 배치할 예정임.

1) 연구직공무원의 계급은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연구관(3~5급에 해당)과 연구사(6~7급에 해당)로 구분됨.

- 서울과 같은 대도시는 유동인구가 많고 짧은 시간에 감염병이 확산되는 특성이 있어, 신속한 감염병 대응역량을 확보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전담센터의 필요성은 인정됨.
- 앞으로 감염병 전담센터는 감염병 예방 및 대응관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서울의료원, 공공보건의료재단, 서울연구원 등의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업과 역할 분담을 통해 감염병 관리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킬 필요성이 있음.

다. 전문경력관 정원 상계 조정(사육운영직 △5명 → 전문경력관 +5명)

- 개정안은 서울대공원에 근무하는 사육운영직의 퇴직(5명)에 따라 신규 인력 충원을 위해 전문경력관의 정원을 상계조정 하고 있음.
- 전문경력관은 일반직공무원 중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수한 직무분야로써 순환보직이 곤란하거나 장기재직 등이 필요한 경우에 계급 구분, 직군과 직렬분류를 적용하지 않는 직위를 말함²⁾.
- 서울시는 공무원 직군의 단순화를 위해 개정된 「지방공무원법」(2013.3.12.)에 따라 관리운영직군인 사육운영직을 전문경력관으로 대체하고 있으며, 지난 293회 임사회에서 관리운영직군의 퇴직과 점진적 폐지에 대비해 전문경력관의 비율을 1.5%로 상향조정한 바 있음³⁾.

2) 전문경력관의 직위는 직무의 특성과 난이도·숙련도에 따라 가, 나, 다 군으로 구분되며, 신분보장, 교육, 복무는 동일하나 계급구분, 임용, 보수에서 일부 특례를 인정받음.

3) 비율조정에 따라 서울시에 둘 수 있는 전문경력관의 총원은 105명 이내에서

- 동물의 사육과 관리, 동물원 운영 등의 업무는 해당분야의 전문성과 장기간 오랜 경험을 가진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전문경력관으로 운영되는 것이 특수분야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유지하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임.

라. 종합의견

- 개정안은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8명을 증원하고, 관리 운영직군의 폐지에 따른 결원을 전문경력관으로 전환하여 상계조정 하고 있음.
-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감염병에 대한 방역이나 비대면 의료 서비스, 공공의료서비스 확대 등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관리운영 직군의 퇴직에 따라 해당 특수업무 분야의 전문인력 정원을 적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입법조치임.
- 다만 서울시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20~2024)’은 ‘감염병 역학 조사 및 대응강화’ 인력으로 향후 5년간 3명을 증원⁴⁾하는 것으로 계획한 바 있음.
- 중장기적 행정수요에 따라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인력운영을 도모하기

158명 이내로 변동되었으며, 현원은 104명임.

4) 2020년, 2022년, 2024년에 각 1명.

위해 수립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과 달리 올해에만 8명을 증원하는 것은 계획적인 인력운용방안으로 보기 어려움.

- 한편, 개정안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인건비 약 6억 6천 2백만원을 포함한 총인건비는 1조 8,331억원으로 추정되며, 기준인건비 1조 8,616억원 대비 약 285억원의 여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12명, 참석위원 7명, 전원찬성)

V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1563 |
|----------|------|

제출년월일 : 2020년 5월 25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감염병 대응 조직 신설을 위해 감염병 전담인력을 증원하고, 서울대공원의 사육운영직 퇴직 인력을 신규 충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칭)감염병전담센터 설치에 따라 감염병 전담인력을 증원함(+8명).

- 센터장 4급 정원 +1 및 연구사 정원 +7

나. 서울대공원의 사육운영직 퇴직에 따른 신규인력 충원을 위해 전문경력관 정원을 조정함(5급 이하 △5명 → 전문경력관 +5).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112조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참조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첨부

2) 입법예고('20. 5. 14.~5. 18.) 결과: 의견없음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8,701명”을 “18,709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0,402명”을 “10,410명”으로 한다.

별표3 중 총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
|----|--------|--|
| 총계 | 11,513 | |
|----|--------|--|

같은 표 일반직 계란, 4급란, 5급 이하 소계란, 전문경력관 소계란, 연구직 계란 및 연구사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 | |
|-------|--------|--|
| 일반직 계 | 10,536 | |
|-------|--------|--|

| | | | | | | |
|----|-----|-----|----|---|----|---|
| 4급 | 247 | 147 | 17 | 8 | 66 | 9 |
|----|-----|-----|----|---|----|---|

| | | | |
|----------|--------|--|--|
| 5급 이하 소계 | 10,115 | | |
|----------|--------|--|--|

| | | | |
|----------|-----|--|--|
| 전문경력관 소계 | 109 | | |
|----------|-----|--|--|

| | | | |
|-------|-----|--|--|
| 연구직 계 | 394 | | |
|-------|-----|--|--|

| | | | |
|-----|-----|--|--|
| 연구사 | 332 | | |
|-----|-----|--|--|

부 칙

이 조례는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 | | | | | 개 정 안 | | | | | | |
|--|---------------|------------|--------|-------|-----|------------|--|---------------|------------|--------|-------|-----|------------|
| 제2조(정원의 총수) 서울특별시에 두는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한다) 정원의 총수는 18,701명 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 | | | | | | 제2조(정원의 총수) ----- ----- ----- 18,709명 -----. | | | | | | |
|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을 제외한다.) : 10,402명 | | | | | | | 1. ----- ----- 10,410명 | | | | | | |
| 2. ~ 5. (생략) [별표 4] 정원의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제1항 관련) | | | | | | | 2. ~ 5. (현행과 같음) [별표 4] 정원의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제1항 관련) | | | | | | |
| 구 분 | 계 | 본 청 | 의회 사무처 | 직속 기관 | 사업소 | 합 의 제 행정기관 | 구 분 | 계 | 본 청 | 의회 사무처 | 직속 기관 | 사업소 | 합 의 제 행정기관 |
| 총 계 | 11,505 | | | | | | 총 계 | 11,513 | | | | | |
| 정무직 계 | 2 | | | | | | 정무직 계 | 2 | | | | | |
| 시 장 | 1 | 1 | | | | | 시 장 | 1 | 1 | | | | |
| 부시장 | 1 | 1 | | | | | 부시장 | 1 | 1 | | | | |
| 일반직 계 | 10,535 | | | | | | 일반직 계 | 10,536 | | | | | |
| 1급 | 7 | 6 | 1 | | | | 1급 | 7 | 6 | 1 | | | |
| 2·3급 | 24 | 18 | | 1 | 3 | 2 | 2·3급 | 24 | 18 | | 1 | 3 | 2 |
| 3급 | 19 | 10 | | 1 | 8 | | 3급 | 19 | 10 | | 1 | 8 | |
| 3·4급 | 5 | 5 | | | | | 3·4급 | 5 | 5 | | | | |
| 4급 | 246 | 146 | 17 | 8 | 66 | 9 | 4급 | 247 | 147 | 17 | 8 | 66 | 9 |
| 4·5급 | 10 | 10 | | | | | 4·5급 | 10 | 10 | | | | |
| 5급 이하 소계 | 10,120 | | | | | | 5급 이하 소계 | 10,115 | | | | | |
| 전문경력관 소계 | 104 | | | | | | 전문경력관 소계 | 109 | | | | | |
| 별정직 계 | 37 | | | | | | 별정직 계 | 37 | | | | | |
| 4급상당 | 5 | 3 | 2 | | | | 4급상당 | 5 | 3 | 2 | | | |
| 5급상당 이하 소계 | 32 | | | | | | 5급상당 이하 소계 | 32 | | | | | |
| 연구직 계 | 387 | | | | | | 연구직 계 | 394 | | | | | |
| 연구관 | 62 | 4 | | 34 | 24 | | 연구관 | 62 | 4 | | 34 | 24 | |
| 연구사 | 325 | | | | | | 연구사 | 332 | | | | | |
| 지도직 계 | 24 | | | | | | 지도직 계 | 24 | | | | | |
| 지도관 | 2 | | | 2 | | | 지도관 | 2 | | | 2 | | |
| 지도사 | 22 | | | | | | 지도사 | 22 | | | | | |
| 교육공무원 계 | 520 | | | | | | 교육공무원 계 | 520 | | | | | |
| 총 장 | 1 | | | 1 | | | 총 장 | 1 | | | 1 | | |
| 교수 등 | 450 | | | 450 | | | 교수 등 | 450 | | | 450 | | |
| 조 교 | 69 | | | | | | 조 교 | 69 | | | | | |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 용 추 계 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을 18,701명에서 18,709명으로 총 8명 증원함에 있어 관련 인건비 발생
(서기관 +1명, 연구사 +7명)
2. 비용추계의 전제 : 2020년 서울특별시 인건비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향후 5년간의 소요인건비 추계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 연도 |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4차년도 | 5차년도 | 합계 |
|------------------------------------|-------|---------|---------|---------|---------|---------|-----------|
| 구분 | 세입 | | 해 | 당 | 없 | 음 | |
| | 소계(a) | | 해 | 당 | 없 | 음 | |
| 구분 | 세출 | | 해 | 당 | 없 | 음 | |
| | 인건비 | 276,018 | 680,992 | 700,060 | 719,662 | 739,812 | 3,116,545 |
| | 소계(b) | 276,018 | 680,992 | 700,060 | 719,662 | 739,812 | 3,116,545 |
| <input type="checkbox"/> 총 비용(a-b) | | 276,018 | 680,992 | 700,060 | 719,662 | 739,812 | 3,116,545 |

※ 매년 인건비 상승률 2.8%('20년 기준) 적용 추계

※ 1차년도는 정원 배정시기 고려 5개월분으로 비용추계(정원배정 시기 : '20.7.30.(예정))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 연도 |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4차년도 | 5차년도 | 합계 |
|----|-------|---------|---------|---------|---------|---------|-----------|
| 구분 | | | | | | | |
| 국비 | | | | | | | |
| 구분 | 지방세수입 | 276,018 | 680,992 | 700,060 | 719,662 | 739,812 | 3,116,545 |
| | 세외수입 | | | | | | |
| | 지방채 등 | | | | | | |
| 민간 | | | | | | | |
| 기타 | | | | | | | |
| 합계 | | 276,018 | 680,992 | 700,060 | 719,662 | 739,812 | 3,116,545 |

5. 덧붙이는 의견 : 없음

6. 작성자 :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 2133-6724)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정원 변동내역 : +8명

○ 일반직공무원 : +8명

- 서기관+1, 연구사+7

2. 비용소요 추계 : 662,444천원

(단위 : 천원)

| 구 분 | 소요비용 | 세 부 내 역 | 비 고 |
|-----|----------|--|------------------------|
| 합 계 | +662,444 | ◆ 총 계 : +662,444 ○ 일반직(+8명) : +662,444 ▷ 서기관(+1) : $118,117 \times 1명 = 118,117$ ▷ 연구사(+7) : $77,761 \times 7명 = 544,327$ | '20년 인건비 예산편성 기준 |

※ 비용추계 상세내역은 1년 기준으로 추계한 것임